

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과제

리츠메이칸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
아리마츠 료(有松 玲)

들어가며

장애인 제도개혁 추진회의(이하, 추진회의)에 대한 분석
⇒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밝힌다.

I. 추진회의의 경위

(1) 추진회의의 개최

- ① 50년만의 정권교체
 - 2009년 8월 30일 중의원선거 자민당⇒민주당...정권교체
 - 민주당 매니페스토에서 장애인 자립지원법(이하: 자립지원법) 폐지를 언명
- ② 자립지원법 소송의 기본합의서
 - 2010년 1월 7일,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송 원고단·변호단과 국가(후생노동성)가 의기투합하다.
 ⇒ 장애인이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을 언급
- ③ 추진본부의 설치
 - 2009년 12월 8일,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내각회의 결정에 의해 설치. 총리 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며 그 외 대신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.
 ⇒추진회의의 설치(2010년 1월 12일 제1회 회의 개최)

※ 종래의 정책결정 과정과의 차이

- 장애인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제도설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. (나가세, 2011)⇒ 「Noting about us without us」
- 구성원 24명→장애인 11명 (읍저버 2명→장애인 1명)
- 사무국에도 내각부 추진회의 담당실장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장애인 운동 리더가 담당실 직원으로 취임.

(2) 제1차 의견(추진회의에서 2010년 6월 7일 결정 6월 29일 내각회의 결정)

- 장애인 제도개혁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(제1차 의견)
 - 1월부터 6월까지 14회 추진회의의 심의를 거쳐 작성.
 - 117항목의 논점을 의논.
 - 관계 단체나 부처로부터 청취.
 ⇒장애인 제도개혁의 기본적인 방침

○상정예정

- 2011년 가을부터 겨울→제2차 의견.
- 제2차 의견을 기초로 2011년 정례회의→장애인기본법(이하: 기본법)의 발본개정
- 2012년 정기국회→종합복지
- 2013년→차별금지법

(3) 제2차 의견(추진회의에서 2010년 12월 17일 결정)

- 제2차 의견의 주요부분 「I 장애인기본법 개정에 대하여」
- 4가지로 분화→30항목으로 세분화⇒논의가 다방면에 걸치게 되다. 내용도 좀더 깊이 있게(오노우에, 2010) 되다.

II. 기본법 일부 개정에 대하여

(1) 제2차 의견과 「실천·검토에 즈음한 유의점」

- 후생노동성(종합복지법을 관할)→서비스 법에 얽매이게 될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의견
- 문부과학성(장애아교육을 관할)→추진회의가 원칙적으로 분리 교육이라고 현상을 인식한 것을 부정하는 의견

<참고문헌·참고자료>

마츠이 아키히코·카와시마 사토시·나가세 오사무, 2011, 「장애를 다시 묻는다」 동양경제신보사

장애인 제도 개혁 추진 회의, 2010, 『장애인 제도 개혁 추진을 위한 제2차 의견』

오노우에 코지, 2010, 「비틀어 열어내자! 역사의 문 - 장애인 제도 개혁 추진 회의가 발족」, 계간 복지 노동 126.

(2) 제2차 의견과 개정기본법

- ① 장애의 정의
 - 제2차 의견: 사회모델→「주기적」「단속(斷續)적」을 추가하다.
 - 개정기본법: 추가하지 않음
 - 장애인단체: 「주기적」「단속적」의 추가
- ② 교육
 - 제2차 의견: 통합교육 (inclusive education) 이 명기되어 있다.
 - 개정기본법: 「가능한 한」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함께 교육
 - 장애인단체: 「가능한 한」의 삭제, 통합 교육의 명기
- ③ 지역생활
 - 제2차 의견: 권리에 기반한 지역생활
 - 개정 기본법: 「가능한 한」지역생활
 - 장애인 단체: 「가능한 한」의 삭제

(3) 「가능한 한」이 자주 언급됨에 대해

- 「가능한 한」 6군데, 「부담이 과중하지 않을 때」 2군데
- 위 외에도 차별금지, 의료, 복지 서비스, 합리적 배려⇒이념법에도 불구하고 권리성이 약해지다.

III. 왜 제2차 의견은 개정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았는가?

(1) 장애인 정책의 동향 - 권리라는 관점에서

- 이상=추진회의의 방침
- 기본법의 포인트=「보호의 객체로부터 권리의 주체로」(오노우에 2010)
 - ⇒ 권리를 장애인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.
- 현실=정치의 흐름
- 95년 권고(사회보장제도심의회, 1995)+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=조세의 분배에 의한 권리로서의 사회보장·복지에서, 공조와 연대의 사회보장·복지로의 전환⇒복지를 넘어 전진
- 「장애인 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이라는 관점이 지극히 불충분하고, 국제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. 『가능한 한』을 삽입하여 권리성을 유보하는 기술(記述)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.」(사회민주당, 기본법 개정에 관한 요청)

(2) 장애인 정책의 현황-사회보장·조세 일체개혁 성안(이하: 성안)

- 추진회의의 논의와 병행된 성안의 논의
- 문제점
 - ①누진적 성격이 낮은 소비세를 사회보장 목적세로 하는 것
 - ②부담이 높고 서비스는 줄어드는 것
 - ⇒최근 30년간 장애인이 발전시켜 온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다.
 - ①큰 틀에서 장애인 정책을 다루고 있다.
 - 공정표-2012년 정기국회에서 「추진회의의 논의를 거쳐, 장애인 종합복지법 상정」이 명기.
 - ② 개호에 관한 성안은 3% 삭감이라는 수치목표를 내걸고 있다.
 - ⇒장애인 개호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.
 - 복지부회의 기본 안에 제시되어 있던 「개개인의 생활에 적절한 서비스」와는 동떨어진(지고) 한층 제한된 서비스만을 받을 수 밖에 없다.
 - 자립생활운동이 지방자치단체와의 끈질긴 교섭을 한 끝에 획득해온 것이 빼앗길 가능성도.
 - ③ 서비스에 대한 자기부담이 제시되어 있다.
 - 세대 간, 세대 내를 불문하고, 「부담과 급부의 밸런스」가 언급됨.

상술한 정치적 변화 가운데에서 제2차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.

결어

- 장애인에게는 좋지 않은 흐름
 - = 장애인의 생활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
 - ⇒변화를 위해서는 보다 나은 종합복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.
- 장애인 정책론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.